



# 회칙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 목적

관할 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며, 인권, 재산, 치안 등을 보호 관찰하고 동포 상호간의 신뢰와 경제 활동, 봉사 활동 참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명칭

본회는 **버지니아 한인회 (Korean American Society of Virginia)**라 칭한다.

### 제 3 조 소재지 및 관할지역

1 항) 본회의 소재지는 6131 Willston Dr. Falls Church, VA 22044 로 한다

2 항) 관할지는 Arlington County, Alexandria County, City of Alexandria, City of Falls Church, Fairfax County, City of Fairfax, Loudon County, City of Manassas, Prince William County, Stafford County, and Fredericksburg 로 한다.

**제 4 조** 본회는 부설 기관으로 **버지니아한인회 종합기술학교**를 두며 그 운영을 별도로 정하는 교칙에 의거한다.

**제 5 조** 본회는 병설 기관으로 **버지니아한인회 종합기술학교**를 두며 그 운영을 별도 세부 운영 교칙에 따른다.

**제 6 조** 본회는 5 조, 6 조에 근거한 조직을 별도 체제로 운영한다.

## 제 2 장 회원

### 제 7 조 회원

1 항)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정한다.

2 항) 정회원의 자격은 제 3 조에 규정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로 하며, 특별 회원은 본회 목적에 동참하는 비 한국계로 규정한다. (단, 한국계라 함은 한인 혈통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규정한다.)

### **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**

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- 1) 만 18 세 이상의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2)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.

## **제 3 장 조직 체제**

### **제 9 조 기구**

- 1 항) 본 회는 1 조에 의거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산하 기구 및 조직을 둔다.
- 2 항) 이사회는 30 명 이상 100 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3 항) 회장단은 회장 1 명, 부회장 3 명, 사무총장 1 명으로 구성한다.
- 4 항) 본 회는 회장단 산하에 재무부, 홍보부, 체육부, 여성부, 청소년부 등 5 개 부서를 두어 집행부를 구성한다.
- 5 항) 회장단은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6 항) 본 회는 관할 지역 (제 3 조 2 항)별로 지부를 둔다.

### **제 10 조 회장 및 부회장 선출**

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관할 지역 동포의 투표에 의한 선거로 선출한다.  
(이하 선거 방법 및 세칙은 제 6 장 선거 규정에 따른다.)

### **제 11 조 임원 및 분과 위원장 선출 및 임명**

- 1 항) 고문 및 자문은 회장이 위촉한다.
- 2 항)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.
- 3 항) 회장,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- 4 항) 특별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5 항)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, 면한다.
- 6 항) 지부장은 회장이 임면한다.

## 제 12 조 임원의 임기

- 1 항) 회장단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,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에 준한다.
- 2 항) 임원의 기능 및 업무는 제 13 조에 따른다.

## 제 13 조 임원의 임무

- 1 항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 (단, 필요시 이사회의 인준을 요한다.)
- 2 항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 항) 감사는 년 1 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4 항)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조직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- 5 항) 지부장은 관할 지역 유대 및 업무 연락을 전담하여 회장을 보필한다.
- 6 항) 집행부의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  1. 총무부: 각 종 회의 준비 및 기록 유지, 본회의 종합 계획서 수립
  2. 재무부: 예산 수립 및 결산서 작성, 금전출납 및 재정 서류의 기록 보전
  3. 홍보부: 대변인, 대내외 홍보 활동, 본회의 회보 발간, 문화 사업 계획 및 시행
  4. 여성부 : 여성 단체와의 협조, 부녀 상담업무, 행사 시 봉사 활동
  5. 청소년부 청소년 지도 업무, 청소년 단체와의 협조

## 제 4 장 재정

### 제 14 조 재원

1. 카운티 보조 및 재외동포재단 보조금
2. 이사회비
3. 후원 및 찬조금
4. 행사 수익금
5. 기타 지원금

### 제 15 조 상근 직원 및 비상근 직원 임금지급

- 1 항) 상근 직원
  1. 상근 직원 1 명은 한인회와 한인회종합기술학교를 총괄하여 근무한다.
  2. 비상근 직원 00 명 및 대여비
    - 가. 세미나
    - 나. 행사 초청인사

다. 행사 장소 대여비

라. 기구 대여비

2 항) 지출

1. 상근직원 1 명은 종합기술학교에서 지급한다.
2. 제 15 조 1-2 항의 지출은 한인회에서 지출한다.

## 제 5 장 회의

### 제 16 조 총회

- 1 항)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2 항) 총회 의장은 회장이 주재한다.
- 3 항) 정기총회는 매년 11.12 월중에 소집한다.
- 4 항) 총회소집은 개최일 15 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5 항) 총회는 회원 100 명 이상으로 성회한다 (위임장 인정)
- 6 항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7 항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 1/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또는 회원 100 명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.
- 8 항) 총회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.
  1. 정 부회장 당선 인준
  2. 회칙 개정(출석인원 2/3 이상이 결의하여야 한다.)
  3. 재정 및 사업보고
  4.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.

### 제 17 조 이사회 부칙, 의결 사항 및 의무

- 1 항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2 항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한다.)
- 3 항) 이사회는 이사장이 대표하며 이사장 유고시는 회장의 추천 이사회의 인준을 요한다.
- 4 항)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회장단의 제출 의안, 총회 상정 안건 결의
  2. 회장단 상정 안건
  3.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및 인준

4.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보궐 선거권
  5. 감사 및 특별위원장의 인준
  6. 각종 시행세칙의 제정
  7. 이사회비 책정
  8. 기타 중요사항
- 5항)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6항)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## 제 6 장 선거

### 제 18 조 선거관리위원회

본회는 선거 관리 업무를 관장키 위하여 선거일 70 일전에 회장단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0 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- 1 항) 선거 관리위원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관위원장 1 명과 선관위원 4 명을 임명한다.
- 2 항) 선거 운동기간은 투표일로 역 계산하여 30 일로 정한다.
- 3 항)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
  1. 정, 부회장 후보의 등록서류 접수 및 적심사
  2. 정, 부회장의 선거운동 감시 감독 및 징계
  3. 투표권자의 등록 및 명부 관리, 투표 및 개표, 장소 설치 운영
  4. 후보자 공탁금 관리 및 운영, 인수인계
  5.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한다.

**제 19 조 선거운동 규정 및 징계는 시행세칙에 준한다.**

### 제 20 조 투표권과 피선거권

- 1 항) 투표권은 제 8 조에 해당되는 정 회원으로서 버지니아에 거주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 부여한다.
- 2 항) 회장, 부회장 후보는 35 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6 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.

### 제 21 조 입후보자의 등록

정 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.

## 제 22 조 선거관리 세칙

선거에 관한 시행세칙은 선거 관리 세칙에 의한다.

1 항) 징계위원회 구성

1. 선관위원 5 명과 회장과 부회장 2 명으로 한다.
2. 징계위원은 거부권을 갖는다.
3. 가결 방법은 무기명 가부를 표기하고 만장일치로 한다.

2 항) 징계위원회 소집은 선관위원회의 요청으로 한다.

3 항) 징계발효는 징계위원회 결정과 동시에 해당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발효한다.

## 제 23 조 회계 연도

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 단, 회장의 임기가 선거 관리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일전에 선출되어 취임 된 때에는 회장 취임일로부터 가산하는 것으로 본다.

## 제 7 장 부칙

제 24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고 특별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제 25 조 발효일

1 항) 본 회칙은 통관된 날부터 발효한다.

2 항) 수정안은 2002 년 6 월 임시총회 통과부터 발효한다.

3 항) 수정안은 2004 년 11 월 6 일 정기총회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.

4 항) 수정안은 2005 년 12 월 19 일 정기총회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.

5 항) 수정안은 북버지니아 한인회 명칭을 **버지니아한인회로 명칭을 변경**한다.

2010 년 12 월 1 일 정기 총회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.

6 항) 수정안은 2022 년 12 월 4 일 정기총회 통과일부터 발효한다.

참석한 전직회장 6 명(8 대회장 김태환, 9 대회장 강남중, 10 대회장 고대현, 15 대회장 김태원, 17 대회장 은정기, 18 대회장 은영재)+참석자 106 명 만장일치 통과

1. **버지니아한인회 제 16 대 회장 우태창을 영구제명** 한다.

2. **한인회장 임기는 1 월 1 일부터 익년 12 월 31 일까지로** 한다.